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2020. 12
www.lh.or.kr



양산사송이라 편리함 UP 영구임대니까 주거비 DOWN

Y A N G S A N S A S O N G A - 8 B L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총 255세대 [전용 26A/Bm²]



인터넷(LH 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신청(24시간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LH 홈페이지 www.lh.or.kr

문의

055) 210-8331~4, 1600-100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가까운 교통



가벼운 임대료



편리한 생활



양산사송이라 편리하고 영구임대니까 부담없고

양산사송 A-8블록 영구임대주택



가까운 교통



가벼운 임대료



편리한 생활

Contents

02 Contents	04 지역조감도 위치도	06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08 단지조감도 조경배치도
10 Unit plan	14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16 실내 마감재 내역	17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본 이미지투시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G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reat Location

지역조감도, 위치도



바라보면 금정산 / 나서보면 내송역(예정) / 풍부한 편의시설

아름다운 금정산과 편리한 교통&생활! 양산사송은 쾌적한 자연과 편리한 도시가 공존합니다.

- ▶ 양산과 부산 동시 생활이 가능한 도시철도 내송역(예정) 등 편리한 교통
- ▶ 역세권의 풍부한 상업시설과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및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학군(예정)
- ▶ 금정산과 군지산 사이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산책로가 조성되는 수변공원 인접(예정)



내송역(예정) 역세권

- 북정역~노포역 간 도시철도 개통 시 내송역(예정) 도보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양산시청역 1정거장, 노포역 2정거장
-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이용 편리 및 양산과 부산을 잇는 노포사송로 등

인프라 가득한 자족도시

- 지구 내 공공청사, 상업시설, 자족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one-stop life가 가능한 다기능 복합도시
- 단지 옆 근린생활시설과 역세권의 풍부한 인프라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학군(예정)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인근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물론 가까운 양산산막 · 어곡 · 유산일반산업단지 등

금정산과 군지산 사이의 쾌적한 환경

군지산의 푸른 자락을 배경으로 앞에는 아름다운 금정산이 위치해 있고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조성(예정)

Best Landscape

지구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역세권 상업시설 / 숲세권 / 유통시설

나서보면 편의시설, 가다보면 근린공원(예정)!
양산사송 A-8블록은 살면 살수록 살기 좋은 곳 입니다.

- ▶ 쇼핑을 즐겁게 하는 역세권의 상업시설과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 ▶ 금정산과 군지산으로 싸여있는 숲세권
- ▶ 지구 내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물론 대규모 자족시설 조성 계획



**상업 · 교육 · 자족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도시!**



범례

단독주택	복합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복합커뮤니티	학교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주유지
상업용지	주차장	배수지
유통시설	유수지	상수도가압장
종교시설	배수지	광역상수도
자족시설	상수	가스공급설비
근린공원	수도	열공급설비
어린이공원	가스	전기공급설비
소공원	열	보행자전용도로
수변공원	전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하천		
공공청사		

Best Site map
단지조감도, 조경배치도



가벼운 임대료 / 안정적인 거주 / 다양한 편의시설

쾌적한 새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부담없는 주거비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양산사송 A-8블록!

-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새집에서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
- ▶ 최장 50년 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복지관, 주민공동시설, 휴게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 계획



양산사송 A-8블록 층 808호 (영구 255세대, 국민 403세대, 행복 150세대)											
영구임대(금회공급)		국민임대(별도 공급)						행복주택(별도 공급)			
26A	26B	27A	37A	37B	46A	46B		21A	29A	29B	44A
241세대	14세대	403세대						150세대			

가벼운 임대료로 최장 50년 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임대료로 최장 50년 까지 내 집처럼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원하는 경우 최장 50년 까지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 가능



자녀부터 어른까지 편리한 단지구성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주민복지관과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편의시설 계획



Unit Plan
단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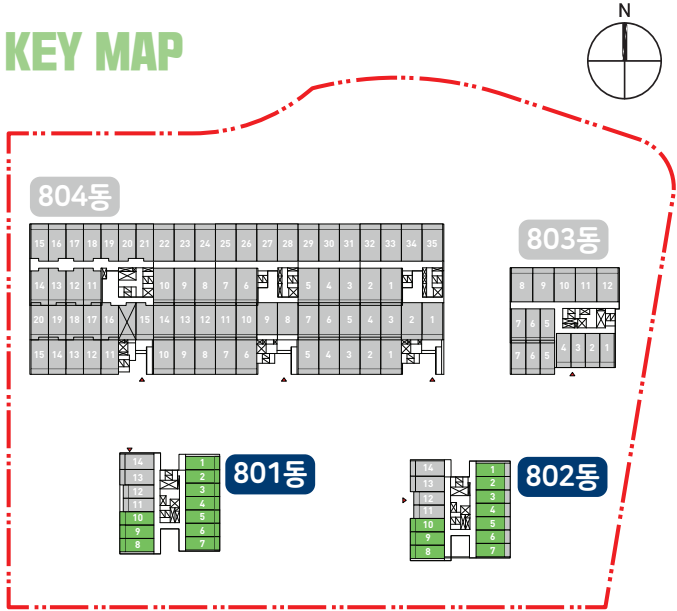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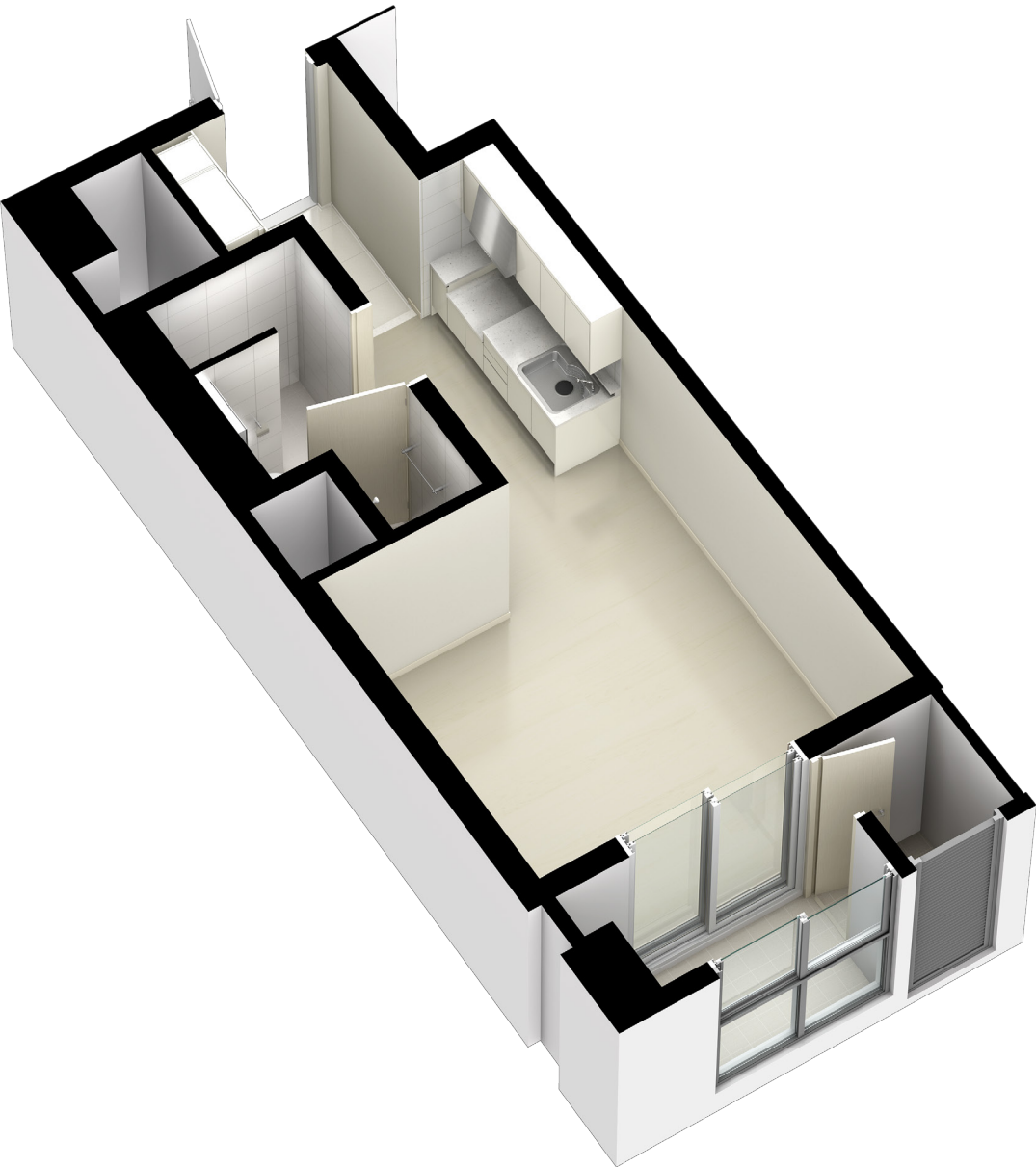
26A

241세대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26.1600㎡
주거공용면적	13.8120㎡
기타공용면적	3.3467㎡
주 차 장	16.9720㎡
계 약 면 적	60.2907㎡

전 용 면 적	
거 실 / 침 실	13.12㎡
주 방 / 식 당	5.87㎡
욕 실	4.50㎡
현 관	2.67㎡
합 계	26.16㎡

발 코 니 면 적	
발 코 니	5.88㎡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Unit Plan
단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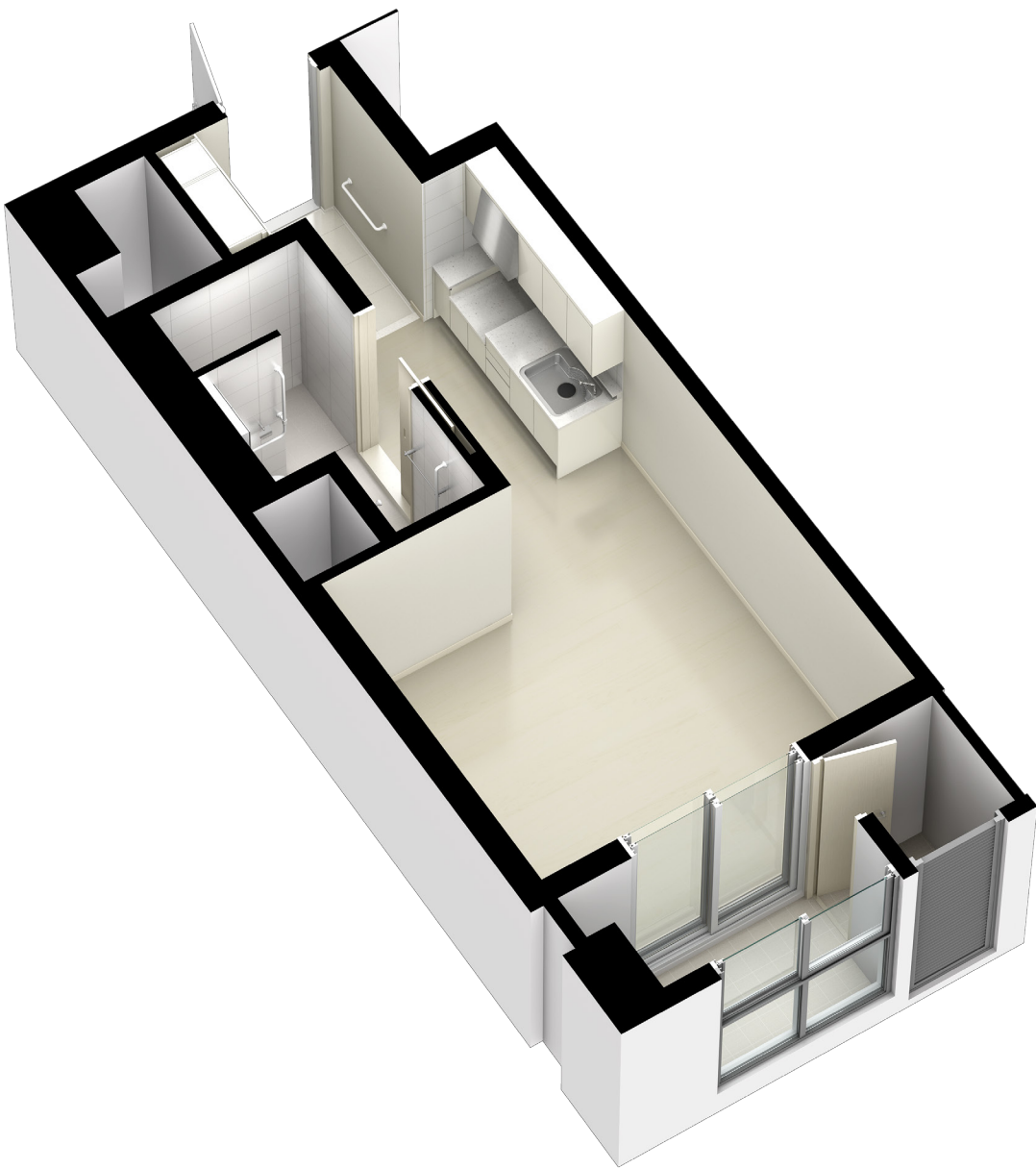
26B

14세대 [주거약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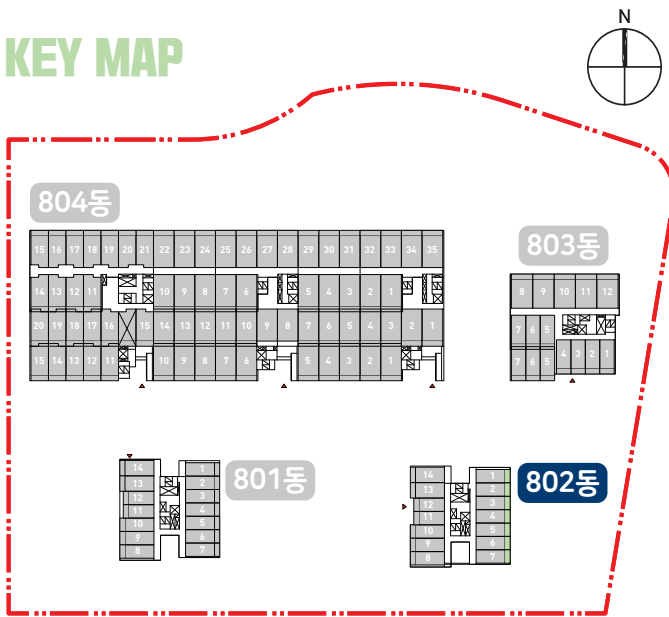
주 택 면 적	
전 용 면 적	26.1600㎡
주거공용면적	13.8120㎡
기타공용면적	3.3467㎡
주 차 장	16.9720㎡
계 약 면 적	60.2907㎡

전 용 면 적	
거 실 / 침 실	13.12㎡
주 방 / 식 당	5.87㎡
욕 실	4.50㎡
현 관	2.67㎡
합 계	26.16㎡

발 코 니 면 적	
발 코 니	5.88㎡



KEY MAP



26B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 현관 · 욕실 안전손잡이
- 야간 센서 하부등
- 욕실 비상콜
- 욕실 출입문 확대(미닫이 욕실문)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차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차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양산사송 A-8블록 영구임대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양산사송 A-8블록
영구임대주택 총 255세대

26A 241세대

26B 14세대
[주거약자용]

14F	옥상											
13F												
12F												
11F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9F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F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1F	주민 공동시설, 필로티											
지하1층	관리사무실, 문화센터 등											
지하2층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지하3층	근린생활시설											

26A(115세대)	21A (26세대)	29A(22세대)
801동 [167세대]		29B(4세대)

15F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옥상			
14F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3F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2F	1201	필로티		1204	1205	1206	1207	필로티						
11F	1101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0F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9F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8F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7F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6F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5F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4F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3F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2F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1F	101	102	103	104	105	106	107				필로티			
지하1층	지하주차장, PIT층													
지하2층	지하주차장, PIT층													
지하3층	지하주차장, PIT층													

26A(126세대)	21A (20세대)	29A(16세대)
26B(14세대)		29B(4세대)
802동 [180세대]		

※ 상기 단지배치도 및 동 · 호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산사송 A-8블록 영구임대 실내마감재내역

항목		마감 사양	비고
현관	현관도어록	레버형	
	신발장	문짝 HPL, 체대 LPL	
	바닥	자기질시유타일	
거실/침실	비디오폰	칼라 7인치	
	바닥재	룼카펫트	
	벽지	벽: 실크도배지 천장: 발포도배지	
침실	바닥재	룼카펫트	
	벽지	벽: 실크도배지 천장: 발포도배지	
	창호	합성수지창호	
	문짝	ABS도어	
주방	싱크대	상판(BMC)/문짝(LPL+HPL)	
	개수대	언더싱크용	
	렌지후드	디럭스형	
	싱크수전	측면개폐형	
	바닥재	룼카펫트	
	주방벽	도기질시유타일	
욕실	세면기(세면기수전)	설치	
	양변기	설치	
	샤워수전	설치	
	세탁기수전	설치	
	타일(벽)	도기질타일	
	타일(바닥)	자기질타일	
발코니	발코니샷시	합성수지창호	
	청소용 수전 (화조물주기용 겸용)	설치	
	발코니수전	설치	
조명설비	발코니/욕실/현관 거실/침실/주방	LED	
기타/정보통신	CCTV시스템	200만화소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화장실 입구 동작감지센서 부착된 등 설치	

양산사송 A-8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된 주택에 청약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임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55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26A	241	26.16	13.8091	3.3459	16.9684	60.2834	241	-	52	189	801 802	라멘구조 · 지역난방	‘23.09월
26B	14						14	14	-	-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403호), 영구임대주택(255호), 행복주택(150호)가 건설되는 혼합단지입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26B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 **주거약자용**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 **우선공급 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신청 구분	공급 형별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가」군	26AB	2,387,000	477,000	1,910,000	47,500	(+)	3,000,000	5,387,000	32,500
						(-)	1,000,000	1,387,000	49,580
「나」군	26AB	13,475,000	2,695,000	10,780,000	112,820	(+)	13,000,000	26,475,000	47,820
						(-)	10,000,000	3,475,000	133,650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상기 마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기타사유 등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세탁기 설치공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세대(26A,B)내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격은 미정 입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30)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322,574)원이하	(1,851,603)원이하	(2,645,147)원이하
	2인가구	(2,189,905)원이하	(3,065,866)원이하	(4,379,809)원이하
	3인가구	(2,813,449)원이하	(3,938,828)원이하	(5,626,897)원이하
	4인가구	(3,113,171)원이하	(4,358,439)원이하	(6,226,342)원이하
	5인가구	(3,469,177)원이하	(4,856,848)원이하	(6,938,354)원이하
	6인가구	(3,797,042)원이하	(5,315,858)원이하	(7,594,083)원이하
	7인가구	(4,124,906)원이하	(5,774,868)원이하	(8,249,812)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0,0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 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제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한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26A	52	24	4	24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에 한함
26B	-	-	-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우선공급	-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별표3 제2호 나목) 귀한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별표3 제2호 다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수급자 -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산·임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2) 양산시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2인 1주택 기준 신청, 중복신청시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 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 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 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양산시송 A-8BL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20001443]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일반공급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 관련)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양산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마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마성년 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및 귀환국군포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점 합산	➡	양산시 전임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5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12.30)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 점
총계		6
1. 신청자 나이 (2점)	70세이상	2
	65세이상~70세미만	1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1
3. 양산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4.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3
	중증장애인 외	1

* 양산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양산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21.01.11(월)~15(금) 10:00~16:00 (점심 12:00~13:00)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1.04.07(수) 17:00 이후	전자 계약	‘21.04.20(화) 10:00 ~ 04.22(목) 17:00
			현장 계약	‘21.04.20(화) 10:00~16:00 (점심 12:0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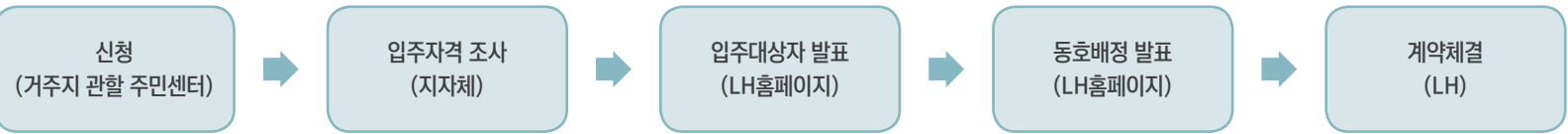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은 온라인 및 현장 모두 가능하며 **현장계약은 지정된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장소 :양산물금 천년나무 아파트 단지내 2층 커뮤니티실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12.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및 장애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 군 · 구청
국가유공자(5 · 18민주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③「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대장자 확인원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 적용 대상 확인원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1.04.07(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온라인 계약** : '21.04.20(화) 10:00 ~ 04.22(목) 17:00
- **현장 계약** : '21.04.20(화) 10:00~16:00(점심 12:00~13:00)
- **현장 계약장소** : 양산물금 천년나무 아파트 단지내 2층 커뮤니티실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2)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 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휴한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구분	유의사항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후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후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후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후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거복지동(중층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여야 합니다. • 양산사송 A-8BL 공공주택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주택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협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사업승인 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3동, 804동 배면에 산이 있어 능선의 높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일조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라 면적,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2개소(801동 전면 주출입구, 804동 배면 부출입구)이며, 보행자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4~19층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801동)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단지이며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지하주차장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는 추후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기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아파트 803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인근 민간분양 단지여건에 따라 전파 간섭 시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801동, 803동, 804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에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및 발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 에 따라 일부세대에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조경석 쌓기 포함)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소방차 주차대 포함)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부대시설 등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설치 시 외부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각 동별 주출입구 위치가 상이하니 주차시 해당 동에 출입가능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계획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 및 옥내 소화전함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배치 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트랜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여건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각 1개소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가스휴즈코크 설치는 입주자 부담사항(별도구매/설치상품)입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팜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재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 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 시에는 입주자 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화재 시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2개의 직통계단을 통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에어컨 배관구는 있으나 매립배관은 없습니다.(영구임대 26타입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실외기실에 환기유닛(1종 기계환기)이 설치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릿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전기, 통신 단자함은 세대 내부에 설치되며, 급수 계량기함은 복도 배관함(PD함)에 설치됩니다. [지구여건] • 당해지구는 양산사송 택지개발사업 진행 지구로서 주변도로 및 단지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여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주변단지 준공일정(A-8BL 입주 후 준공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단지별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3BL : 2024.2월 준공 예정, A-4BL : 2022.8월 예정, B-8BL : 2023.6월 준공 예정 • 당해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 및 매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근 학교 개교 시기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교 예정일 : 초등학교3, 중학교2 2025년 예정(부지통합으로 지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학교 통합 예정)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단, 고등학교 설립계획 주관은 경남도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은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 될 수있으며,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 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양산সা 공공주택지구 경부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관련」, 방음시설 설치 위·수탁 및 유지관리대행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매동교, 외송2교 하부도로는 고속도로 횡단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하여 일정기간 통행이 불가하며, 지구 외 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횡단 지하차도 설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성능등급

※ 아래의 내용은 예비인증서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인증서 발급시(준공시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진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해당없음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율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환경관련 등급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해당없음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함)	적용



구분		적용 여부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외벽(간접면함)	적용
	창호(직접면함)	해당없음(발코니 미확장)
	창호(간접면함)	적용

11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8BL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산업개발(주) 금명종합건설(주) 기룡전기(주) (주)민성 (주)석미 (주)동영이앤지 광운전업사 가온전설 (주)얼라이드시스템 (주)대명	-	(주)목양건축사사무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3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출입문 상단에 자석감지기 설치	전체세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에 75CM이상의 여유 공간 확보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에 자석감지기와 거실에 적외선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 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형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금융 자산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5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양산시청 및 양산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리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LH 청약센터-공고문에 별도첨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30

